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306
----------	-----

발의연월일: 2024년 9월 2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의원

1. 제안이유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관내 노후농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주민 건강에 기여하고, 농작업의 효율 증대 및 농촌 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안 제6조)
- 보조금 지원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2024. 8. 6. ~ 2024. 8. 27.(21일간), 의견 없음.
-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7. 17. ~ 2024. 7. 30.(14일간), 의견 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평창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한 폐기업체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1년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평창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군수는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용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5. 13.>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종류

나. 농업기계의 종류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13년 2월 2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225kW 이상 560kW 미만
2013년 7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6. 12., 2015. 6. 22., 2022. 1. 4.>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 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제7조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2012년12월31일 이전 생산된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 조사된 농기계 현황 중 트랙터 또는 콤바인에 대하여 전체 현황에서 대상 노후 농기계를 10분의 1로 선정하여 5년간 폐차 대수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5년간 38대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 529,970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101,040	88,530	130,960	100,510	108,930	529,970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101,040	88,530	130,960	100,510	108,930	529,970

다. 재원조달 방안 :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 재원 조달은 자체 재원(군비)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연락처	(033) 330 - 4710